【문 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②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문 2】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⑤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할 수 없다.

【문 3】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리재단법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될 수 있다.
③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에게 잉여금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이다.
⑤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 중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문 4】 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③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이상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고객인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문 5】 변제중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하나,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은 물론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다.
③ 변제수령권자가 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지정한 것에 대해 변제자는 즉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자가 충당의 지정을 한다.
④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충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문 6】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상 사무관리에는 보수청구권이나 비용선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유익비는 물론이고 필요비 역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이 원칙이다.

【문 7】 강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고서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이웃거주자가 오후 10시 이후에는 악기연주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악기연주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직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③ 사과 1박스를 매수하여 인도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집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④ 소설을 창작하여 출판하기로 계약을 한 소설가가 창작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출판사는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⑤ 방해물을 건축하지 않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방해물을 건축한 경우에 피해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방해물을 제거토록 하는 강제이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8】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은 발생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 권리·의무관계가 생기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해자가 잔존물을 처분하여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④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주문품을 인도받으라고 최고하였으나 도급인이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주문품이 도난당했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도급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은 청구할 수 없고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 9】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변제를 하기 전에도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증계약이 요식계약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만 보증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문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②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문11】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②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아버지와 동거 중인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 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미성년인 아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운전자인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아들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⑤ 피해자가 가해자인 미성년자 본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12】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의 채권자인 丙이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甲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丙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丙에게 임대하고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인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13】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반환청구가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적어도 그 소제기 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함에 있어,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물건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한다.

⑤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고, 반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건물의 점유자의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지 소유자가 부지 지상의 건물 철거나 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한다.

【문14】 다음 중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안은 모두 몇 개인가?

㉠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의 건물점유자로서의 공작물책임과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의한 피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원채무자의 부탁 없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

① 7개 ② 6개 ③ 5개
④ 4개 ⑤ 3개

【문15】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될 필요가 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제기의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 채무자의 무자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채무자의 무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⑤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게 된다.

【문16】 청약, 승낙,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③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④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⑤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더라도,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17】 권리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당사자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등기, 등록보다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④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가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1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러 목적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먼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 후행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종전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④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1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건물을 제외한 채 그 대지와 부근의 토지들을 함께 乙에게 매도하여 건물과 대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甲이 위 대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고 그 대신 乙에게 위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으나, 위 특약이 甲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 甲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③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본압류로 이행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20】 동산의 점유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소유자이자 직접점유자인 甲과 乙과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甲을 사용차주, 乙을 사용대주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 乙은 동산의 점유권을 취득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甲의 승낙을 얻어 임차인인 乙이 임차권을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고 동산을 인도하면 乙은 동산의 점유권을 상실한다.

③ 수치인 乙이 동산의 소유자이자 임치인인 甲의 승낙을 얻어 丙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 보관시키게 된 경우, 수치인 乙은 동산의 점유권을 상실한다.

④ 간접점유자 甲이 직접점유자 乙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동산의 점유권을 취득한다.

⑤ 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甲이 그 임차인으로 동산을 인도받은 乙과 사이에 그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점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甲, 乙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해 甲은 동산의 점유권을 상실한다.

【문21】 甲, 乙, 丙이 각 3분의 1 지분을 갖고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를 전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토지가 임야인 경우 甲, 乙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을 위하여 그 지상의 수목 전부를 벌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甲, 乙, 丙이 공동으로 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였는데, 丁이 임료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 乙은 둘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은 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뿐 아니라 乙, 丙의 지분에 관하여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 甲이 乙에 대하여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경매대가 8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 丁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변제자 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일 戊가 채무자인 乙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乙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戊는 보증인 丙과 丁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
② 보증인 丙이 40만원을 변제하면 丙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 甲과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바, 저당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경매대금 80만원에서 甲은 48만원, 丙은 32만원을 배당받는다.
③ 위 ②항의 경우 甲과 丙 사이에 경매대금의 배당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④ 보증인 丙과 丁이 각각 40만원과 60만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경매대가 80만원은 변제의 순서에 관계없이 丙에게 32만원, 丁에게 48만원이 배당된다.
⑤ 보증인 丙이 甲에게 40만원을 변제한 후 甲과 丙 사이에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甲이 丙보다 우선회수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후에 丁이 나머지 60만원을 甲에게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丁이 甲의 丙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문23】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소유의 논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그 지상의 벼를 수확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동산이 무권대리인에 의해 매도된 경우, 매수인이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③ 민법 제251조에는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양수인이 대가변상을 요구하려면 무과실도 요구된다.
④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⑤ 점유개정이나 간이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문24】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를 갈음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④ 원고가 공작물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⑤ 원고가 동물의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9조의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문25】 甲→乙→丙 사이에 순차로 토지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三者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甲이 乙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약정을(위 순차 매매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이후에) 乙과 새롭게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② 위 순차 매매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이후에, 甲, 乙 사이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丙은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
③ 甲이 乙에게는 위와 같이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丙에게는 당초의 매매계약상의 항변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당초의 매매계약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이후에 甲과 乙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매매대금 인상의 합의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④ 丙이 매매대금의 인상 약정 전까지 甲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 乙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丙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甲,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⑤ 甲의 의사는 자신이 乙과 사이에서 가지는 권리·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편의상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26】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통상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갖는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27】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④ 변론에서 당사자가 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⑤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문28】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은 목적물의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1년이다.

④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29】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
㉡ 위임사무의 처리와 보수의 지급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0】 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에 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이상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전질하더라도 질권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문3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동산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수치인과 달리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상속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

【문32】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인이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이 그 봉서표면에 각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유언자는 민법상의 유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의 방식을 이용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④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
⑤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에 '2013년 6월'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문33】 미성년자 甲의 모 乙과 부 丙은 이혼을 하였고, 모인 乙이 甲의 친권자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단독으로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를 丙이 추인하였더라도 乙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乙과 丙은 각자 甲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각자 고유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면 甲 또는 甲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乙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선고가 있더라도 친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④ 甲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丙이 아니라 乙만을 상대로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乙이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乙, 甲의 공유인 토지 중 甲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문34】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도 가능하며, 이러한 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 피상속인 甲이 적극재산 1억 원, 소극재산 5,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乙뿐이다. 甲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丙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乙의 丙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甲의 丙에 대한 증여액 7,000만 원을 가산해야 한다.
② 만약 甲이 사망하기 2년 전 丙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더라도, 甲과 丙 중 어느 일방이 증여가 乙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했다면 증여액 3,000만 원은 유류분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乙의 유류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乙의 유류분액이 된다.
④ 乙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순상속분액과 유류분액을 비교하여 순상속분액이 유류분액보다 적을 때 丙의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
⑤ 문제의 사안에서 乙이 丙에게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이다.

【문36】 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⑤ 甲이 乙 소유의 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시효기간 만료 시부터 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37】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ㄴ. 보험약관대출금에 관한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 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된다.
ㄷ.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ㄹ.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과는 달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
ㅂ.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으로써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38】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사전통지 후에 그에 상응하는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효력이 생긴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39】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문40】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③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있다.
④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표현대리에 따른 상대방 보호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있다.